

[] 국내결혼중개업

[] 휴업

[] 국제결혼중개업

[] 폐업

[] 재개업

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결혼중개	상호	신고번호/등록번호
사무소	사무소 대표자 성명	소재지
[] 주사무소		
[] 분사무소		
신고사항	휴업기간	
		~ (일간)
	폐업일	
	재개일	
신고사유		

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·폐업·재개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. 다만,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(폐업신고만 해당합니다)를 제출해야 합니다. 2.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(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합니다) 3.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(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